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84142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변론 종결 2024. 6. 27.

판결 선고 2024. 9. 26.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6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이 사건 2024.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교육콘텐츠 개발, 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서 C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 2) 원고는 2011. 5. 16.경 C와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헌법 및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였던 강사이다.

나. 강사계약(연장)과 부가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2015. 1. 5.경 C와 사이에, '2018. 5. 15.로 만료될 예정인 원고와 C 사이의 기존 강사계약'의 만료일을 2028. 5. 15.로 연장하는 '강사계약(연장)' 및 기간 연장에 대응한 보상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는 '부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강사계약', '부가약정'이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강사계약' 및 '부가약정'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계약금으로 10억 원 상당의 C 주식을 받기로 정하였다(부가약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30.경 C의 신주발행 절차에 참여하여 보통주식 3,51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인수가액 275,000원에 인수하였다(총 인수대금은 9억 6,690만 원이며, 원고는 그 인수대금을 C로부터 지원받았다).
- 3) 원고는 C의 상장 실패 시 신주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2018. 12. 13.까지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C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식매수청구권 유보 조항'을 두었다(부가약정 제6조, 이하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다. 변경합의의 체결

- 1) 원고와 C는 강사계약과 부가약정 체결로부터 약 3년 후인 2018. 4. 12.경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대방으로 C 외에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을 추가하는 변경합의(이하 '변경합의'라고만 한다)를 체결하였다.

2) 강사계약과 부가약정 및 변경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C'이고 '을'은 원고를, '병'은 피고를 각 의미하며 강조 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이다).

■ 강사계약

제3조(업무 범위)

①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은 '강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운영하고 유지·보수한다.
2. 갑은 이용자로부터 수강료의 결제 및 수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한다.
3. 갑은 강의 서비스를 촬영, 편집하여 강의서비스를 제작하며 필요시 스튜디오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4. 갑은 강의 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제작

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강의 서비스 제작 일정 및 계획을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강의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을은 갑과의 계약의무를 준수하고 강의 서비스를 갑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다. 을은 강의 서비스의 매출 및 수준 향상과 새로운 강의 서비스 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2. 학원 강의

가. 갑은 을에게 갑의 직영학원 및 협력학원에서 강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학원 강의와 관련된 조건은 일반적인 학원 관행에 따른다.

나. 을은 갑과 동영상 사업과 관련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없다. 단, 갑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기존계약' 기간에 10년 연장하여 2018년 5월 16.일부터 2028년 5월 15.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부가약정

갑과 을은 갑과 을이 2011. 5. 16. 체결한 강사계약 및 기존계약을 연장하여 2015. 1. 5. 체결한 강사계약(연장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추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계약 부가약정을 체결한다.

제5조(연장 계약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부가약정에 대한 전속 강사 계약의 계약금으로 금 일십억 원(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연장 계약금(이하 '신주인수대금'이라고 한다)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갑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적법한 절차와 내부적 합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날(이하 '유상증자일' 이라고 한다) 또는 2015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을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지급 하기로 한다.

2. 을은 신주인수대금을 유상증자일에 갑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전액 납입하고 신주인수대금과 한 주당 신주의 발행가액(이하 '신주의 발행가액'이라고 한다)의 합계액이 같아지는 수량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다. 이때 갑의 신주 인수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주는 절사한다.

3. 전 호의 신주의 발행가액은 2014년 12월 10.일자로 실시한 갑의 유상증자 당시의 주당가격에 의한다.

제6조(주식 관련 특약)

① 주식매수청구권

전문

갑이 연장계약에 따른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주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을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변경합의

전문

갑과 을은 2015. 1. 5. 강사계약 부가약정서를 체결하고 을은 부가약정에 따라 갑이 발행한 보통주식 3,516주를 인수하였다. 당사자들은 부가약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주식처분의 제한 등과 관련된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

- ① 부가약정의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에 규정된 상장기한까지 갑이 상장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주식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 또는 병은 을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을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병은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병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을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변경합의의 체결 당시 C의 담당자인 D와 계약 내용을 논의하면서 변경합의 제2조 제2항의 "갑(C)이 1개월 이내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을(원고)은 병(피고)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는 문언으로 인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인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D은 원고 측에 "위 제2조 제2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C는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C는 부가약정 및 변경합의로 정해진 상장기한인 2018. 12. 31.까지 상장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13. C에 '변경합의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니 2021. 10. 14.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 내용증명 우편을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하고, 이에 기재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 의사표시를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고 한다).

2) 원고는 2021. 10. 26.경 다시 C에 'C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C와의 강사계약, 부가약정 및 변경합의를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이하 위 내용증명 우편을 '계약해지 내용증명'이라고 하고 이에 기재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계약해지'라고만 한다). 원고가 발송한 각 내용증명 우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의 강조 부분은 원문의 표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이 사건 내용증명

수신: 주식회사 C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

B 의장님

참조: F 그룹장님

1. 주식회사 C(이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 내용증명 우편은 귀사와 이 내용증명 우편의 발신인인 A(생년월일 G, 이하 "본인")사이에 2015년 1월 5.일 체결된 강사계약(연장계약, 이하 "본건 강사계약") 및 2015년 1월 5.일 체결된 강사계약 부가약정(연장계약, 이하 "본건 부가약정"), 그리고 A, 귀사 및 B 사이에 2018년 4월 12.일 체결된 변경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와 관련됩니다.
3. 본인은 본건 합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본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으로서 귀사(주식회사 C)에게 본인이 보유하는 귀사의 주식 전부(보통주식 3,516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4. 이에 따라 귀사는 2021. 10. 14.까지 본인 명의로 개설된 다음 은행계좌로 관련 대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내용증명

3. 본건 변경합의 변경합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발신인은 2021. 9. 13.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귀사에 대해 발신인이 보유하는 귀사의 주식 전부(보통주식 3,516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귀사로 하여금 2021. 10. 14.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귀사는 발신인의 2021. 9. 13.자 내용증명 우편을 수신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발신인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매수대금 역시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귀사 및 수신인 B이 더 이상 본건 강사계약, 본건 부가약정 및 본건 변경합의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본건 강사계약, 본건 부가약정 및 본건 변경합의를 해제(해지)함을 본 내용증명으로 알려드립니다.

마.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21. 11.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4990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강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사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C는 「원고가 강사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무단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가 경쟁 학원의 강사로 이적함으로써 강사계약상 전속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벌로 1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 2022가합518419호, 이하 위 본소, 반소를 합하여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2) 위 법원은 관련소송에서 2023. 7. 11. 「원고가 C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와 인세 등의 합계 금액이 1억 42,437,382원이며, 원고가 경쟁 학원으로 이적함에 따라 C에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을 4억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C에 2023. 8. 25.까지 2억 57,562,618원(위 합의금에서 미지급 강사료 및 인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각 본소 및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3.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주식의 소각

한편,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유하는 중에 C는 2022. 8. 1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식을 감자비율 99.2%로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C는 위 주주총회 결의 당일 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위 절차가 모두 종료된 2022. 11. 25. 자본금감소 및 주식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소유 이 사건 주식 3,516주 중 99.2%인 3,487주가 소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9. 13.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인 9억 6,690만 원 및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 2021. 10. 15.부터 1)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변경합의 체결 당시 C의 임원이었던 D로부터 "변경합의 제2조 제2항2)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C는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이하 변경합의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위와 같은 취지의 D의 발언들을 'D의 설명'이라고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C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제2조 제2항의 문언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D의 기망으로 불리한 내용의 변경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에서 구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C'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부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적 성격의 권리이다. 이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의 결정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 사건 내용증명에 표시된 의사표시를 어떻게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C("귀사"), 피고("B 의장님")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본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으로서 귀사(주식회사 C)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행사 상대방이 C임을 굵은 글씨와 밑줄 표시로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특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수신인에 피고의 이름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도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내용증명에 피고의 성명이 표시된 것은 법인의 명칭 아래 대표자를 표기하는 일반적인 법인 표기 방법에 따른 기재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내용증명의 본문에 'C'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의 수신인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오히려 원고가 ㉠ 2021. 10. 26. C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귀사(C)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재한 점(갑 제6호증), ㉡ 2021. 11. 8.에는 C에 「회사(C)가 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갑 제15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을 법인인 C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원고는 2015. 1. 5. 강사계약과 부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으로 C만을 기재하였다가, 2018. 4. 12. 변경합의 체결로 비로소 개인인 피고도 상대방으로 추가하였다. 변경합의 체결 당시 법률전문가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강사계약의 당사자이면서 자력도 충분한 법인(C)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체결 여부를 검토하였다(을 제6호증 7, 8면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률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그 상대방이 'C'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이상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피고를 상대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또한 「피고는, 자신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 주체임을 인정하고 C 소속 그룹장인 F를 통해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리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F이 2021. 10. 13.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 피고가 돈이 없으니까 돈은 회사가 지급을 하고"라면서 마치 피고가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F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한바(갑 제13호증 4면), 단지 원고에게 C와의 분쟁을 해결할 여러 방안의 예시로서 피고를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F의 위와 같은 설명을 매매계약 성립의 당사자를 정확히 평가하여 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고,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부담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D의 설명에 속아 변경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D이 원고 측에 '이 사건 변경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C는 피고와 병존적으로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D의 설명과 달리 C는 '변경합의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만이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9호증, 을 제6호증 등).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설명에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D의 설명에 관한 피고의 인식을 파악해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더군다나 ① 변경합의서 제2조 제2항은 "C가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문언상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C의 주식매수 의무가 소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갑 제4호증), ② 따라서 D의 설명은 변경합의서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자의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③ 법률전문가인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변경합의서의 문언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으로 이 사건 변경합의 체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증 10면 등), ④ D이 변경합의 체결 당시 '추후 C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불응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 측에 숨겼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D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변경합의서의 내용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변경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통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찬우

판사전준영

판사정문기

1)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부가약정의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에 규정된 상장기한까지 같이 상장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주식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 또는 병은 을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을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병은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병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을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